
문화체육자원봉사 시간인증 기준(안)

I 추진목적

- '자원봉사 인정·보상 기준 시행계획'(행정안전부)에 따라 문화체육자원봉사 인정기준을 공통 적용, 실적관리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 자원봉사활동 인정·보상 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및 확산하여 활성화 도모

II 적용 대상

□ (근거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제11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③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 (적용대상)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문화품앗이)를 통해 실시하는 「문화체육자원봉사」 활동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문화품앗이)

- (문화품앗이) 문화체육자원봉사 활동처와 봉사자 간 매칭시스템 (csv.culture.go.kr)
- (관리주체) 한국문화원연합회
- (추진경과)
 -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구축 : '14.12월
 - 문화품앗이 명칭 변경 및 시스템 고도화 : '16. 4월
 - *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 가입자 가입 가능 확대, 활동 및 관리 매뉴얼 개발 등
 - 1365 자원봉사 포털(행안부) 실적 연계 : '18. 7월 ~

【 기본 원칙 】

- 자원봉사시간 인증은 자원봉사자와 관련기관·단체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 인증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공익성(공공성, 비영리성), 무보수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매 활동별 혹은 누적시간에 따라 시간을 인증관리 한다.
- 봉사자가 요구 시 활동시간에 대한 소정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 시간 인증은 자원봉사자 개인단위로 한다.
- 인증시간을 실제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는 것은 금지한다.
- 시간인증은 초등학생 이상 연령의 봉사활동 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 인증주체에 의해 관리되지 않은 과거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소급하여 인증하지 않는다.
- 시간인증 및 관리방법, 절차는 가능한 간편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1 자원봉사 공통 인정기준

□ 시간 및 활동 기본인정기준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증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여흥	현장 출발	센터등 도착	귀가
인증			활동인증대상시간								

※ 차량봉사의 차량운행 및 기타 봉사시간, 현장순찰활동시간 등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한 시간을 인정

- 다만,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 이동시간 추가 인정

□ 자원봉사 내용별 시간인정기준

○ 문화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연습시간은 인정

※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 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 행사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참여는 불인정

※ 정부·지자체의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 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 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

※ 자원봉사 인정보상 일환으로 제공받은 교육기회 부여에 따른 참여나 자격증 관련 교육 등에 투입된 시간은 제외

○ 번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증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증

○ 물품 및 현금기부 등

-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증할 수 없음

○ 헌혈(전혈, 성분헌혈)

- 시간적용기준 : 회당 4시간

- 연간 자원봉사시간 인정 횟수는 전혈 5회, 성분헌혈 24회 이내

※ 혈액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헌혈 가능 횟수 규정

-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 불가

② 자원봉사활동 주체별 특별 인정기준

□ 중고생 자원봉사활동

- 중고생의 학생자원봉사활동도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동일한 기준에서 시간 인증이 원칙
-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의 시간인증, 반영정도 등은 학교 및 교육청에서 결정
 - 단,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의 별도 인증 필요

□ 기업·직장 자원봉사활동

-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은 개인별 봉사활동시간으로 불인증
 - 단, 해당 기업 봉사팀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음
- 공식적 기업자원봉사 외에 개별적으로 퇴근 후, 주말, 휴일에 수행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인증
 - 국군장병의 경우에도 일과 이후, 휴무일, 개인휴가기간 동안 자원봉사활동 등은 같은 기준으로 실적 인정

□ 자원봉사단체 종사자의 자원봉사활동

- 회장 등 단체대표자의 단체유지 활동시간은 무급이라도 불인정
 - ※ 단, 회원과 함께 실시한 자원봉사활동 등은 인정
- 대표자 이외 회원이 봉사단체의 봉사활동준비 등을 위한 단체유지활동, 공공기관이나 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관리 등을 위한 무급활동은 실제 활동시간을 실적으로 인정

③ 자원봉사활동별 시간인증 기준의 적용 등

- 세부 봉사활동별 시간인증의 판단
 - 시간인증의 공정성 및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붙임의 상한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하되 인증기관에서 자율 결정
- 현장 자원봉사관리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 수밖에 없는 사항의 구체적 적용은 내부심의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

④ 자원봉사활동시간 인증주체 및 인증방법

□ 인증신청자의 범위

- 자원봉사자 개인
- 봉사활동처 자원봉사 담당자 또는 해당 봉사프로그램 담당자
- 자원봉사단체 주관의 경우 해당단체장
- 시·도 지원본부, 시·군·구 지원센터 등

□ 문화품앗이 자원봉사 인증주체 기관

- 문화품앗이 주관기관 (한국문화원연합회)
- 문화품앗이 내 시·도 지원본부 (문화·체육)
- 문화품앗이 내 인증활동처

<활동처 가입 불가 기관>

- 종교적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기업체의 사회공헌기관은 가능)
- 국공립 혹은 사회복지법, 학교법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제외한 보육시설
- 국가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사회적 기업(예비 사회적 기업 등)
- 학원, 교습소 등의 사설교육기관

□ 인증방법

- 문화품앗e에 입력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
- 문화품앗e 내 활동처 담당자의 확인자료 제출 후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

※ 문화품앗e를 통해 모집 → 선정 → 완료된 활동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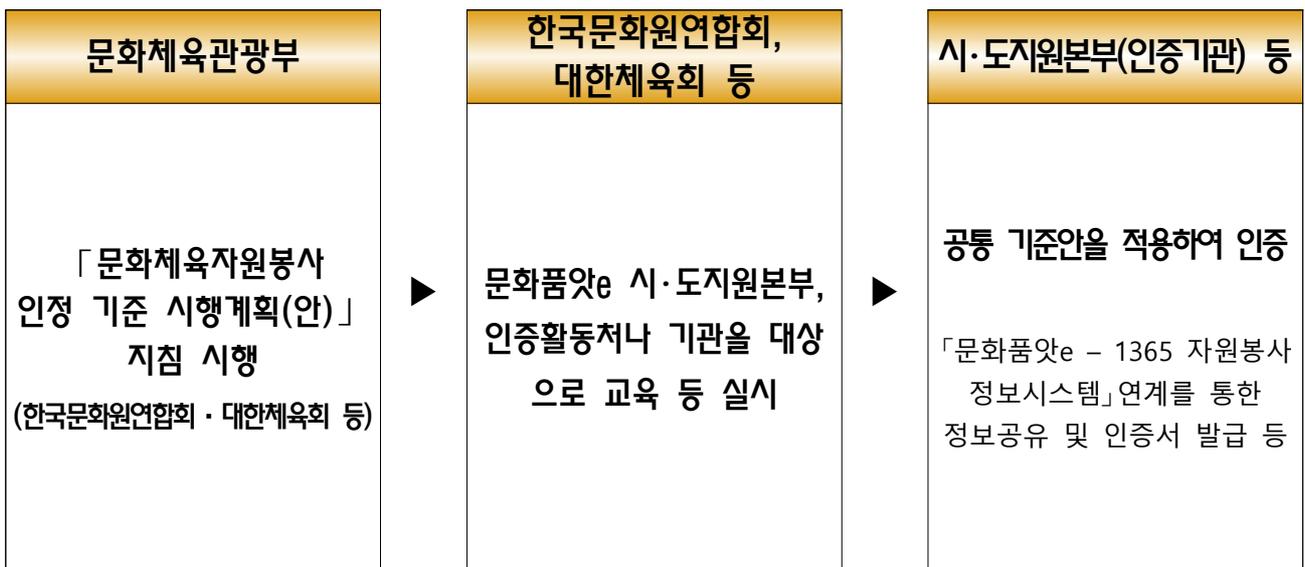
IV

추진계획

□ 자원봉사 시간인증 기준안의 공통 적용

- 문화품앗e 주관기관, 시·도지원본부, 인증 활동처, 기타 인증 담당기관 등 현장 담당기관에서 공통지침을 적용
- 행안부 1365자원봉사 포털 연계를 통해 자원봉사 정보시스템 상호 연계 관리

※ 연계를 통해 자원봉사 실적 정보 등을 공유하고 봉사활동내역서 발급



【붙임】

자원봉사활동 및 시간 적용 (상한)기준

대분류	소분류	시간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급식소 봉사활동	4시간
	김장김치 만들기	8시간
	나들이 보조	8시간
	노인·장애인 수발	4시간
	놀이, 말벗	2시간
	도시락, 밑반찬, 물품 배달	4시간
	모금활동 및 후원 캠페인	4시간
	바자회	8시간
	보육, 음식조리(제과제빵 포함)	4시간
	빨래방 봉사활동	6시간
	사무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 보조	4시간
	영정사진촬영 및 제작지원	4시간
	재가세대 이사지원	8시간
	재가세대 행정 및 금융 업무 대행	2시간
	청소, 빨래, 주변환경 정리	4시간
	체육보조활동	4시간
	기타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	4시간
	호스피스활동	4시간
	의료수발 및 식사보조	4시간
	환자 접수 및 안내, 의료기구 및 보급품 정리 등 행정보조	4시간
	대기실 환경정리, 입원실 청소 및 화단정리	2시간
	물리치료관련 운동보조활동	4시간
	무료의료봉사, 수지침,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4시간
	헌혈자 접수 및 안내, 거리캠페인	4시간
	병동내 및 재가세대 대상 도서대출 및 회수	4시간
	이미용 봉사활동	4시간
목욕봉사활동	4시간	
보건의료분야 자문위원활동	2시간	

대분류	소분류	시간
지역사회 개발·발전	집짓기, 수리(전기 및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도색 등)	8시간
	공동체 마을만들기, 아파트 공동체 실천활동, 주민자치활동	8시간
	농촌봉사활동, 텃밭가꾸기	8시간
	알뜰시장 및 벼룩시장 봉사활동	8시간
	꽃길가꾸기, 놀이터 보수활동	4시간
	기타 지역사회분야 봉사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환경정화활동, 재활용품 수거 및 분류	2시간
	불법홍보물 제거	2시간
	환경감시	4시간
	기타 환경보전(자연보호)분야 봉사활동	
취약계층 권익보호 및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체험, 홈스테이, 청소년수련 지도	8시간
	청소년유해업소감시 및 정화활동	4시간
	청소년 보호 관련 캠페인 활동	4시간
	기타 청소년 육성·보호 분야 봉사활동	
교육 및 상담	평생교육관련 지도활동(예술, 컴퓨터, 언어, 직업교육 등)	4시간
	학교 교과목과 관련된 학습지도	4시간
	면접, 전화, 인터넷 상담(법률, 세무, 여성, 가족문제 등)	4시간
	멘토링(멘토링사업 참가자) 활동	8시간
	기타 교육상담 분야 봉사활동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여성차별개선활동, 아동인권보호활동	4시간
	북한동포돕기 활동 및 캠페인	4시간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활동	4시간
	기타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분야 봉사활동	4시간
범죄예방 및 선도	범죄예방, 야간방범, 유해환경추방활동	4시간
	교도소, 감호소 위문(공연)활동	4시간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	4시간
	기타 범죄 예방 및 선도 봉사활동	

대분류	소분류	시간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교통정리, 주정차안내, 등하교 횡단보도 지도 - 지자체 행사 혹은 명절시 실제활동시간 적용	4시간
	차량봉사(장애인, 노인, 환자 이송활동)	관내 4/ 타지 8
	카풀운동참여(승용차 함께 타기)	4시간
	교통안전교육	4시간
	부정주차금지 캠페인	2시간
	기타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 분야 봉사활동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피해복구활동	8시간
	응급구조활동	8시간
	피해복구참여자 대상 급식활동	8시간
	재해예방교육	2시간
	대민안전캠페인 및 재난재해모금 캠페인	4시간
	피해지역 모니터활동 및 현장사무소 업무보조	8시간
	기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분야 봉사활동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	문화재·관광 가이드, 문화해설	8시간
	문화예술시설 견학안내	4시간
	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 (보조)지도자 활동	4시간
	문화, 예술, 체육행사 지원활동	8시간
	공연봉사활동	3시간
	문화재보호 캠페인	2시간
	문화재지역 환경정화, 유해문화 추방활동	2시간
	기타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분야 봉사활동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지방정부 및 의회 모니터 활동	4시간
	의식계몽활동, 소비자보호활동	4시간
	상업주의 방송 감시활동	4시간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분야 봉사활동	4시간
	기타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분야 봉사활동	
공명선거	선거관련 봉사활동	8시간

대분류	소분류	시간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국외에서의 봉사활동	8시간
	국제기구 및 단체 지원활동	8시간
	국제스포츠행사 지원활동	8시간
	통·번역 봉사활동	8시간
	기타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분야 봉사활동	
공공행정 사무지원	동사무소·시청·세무서·문화의집·주민자치센터·도서관 등에서 민원안내, 사무협력, 도서정리	4시간
	소방서에 소방·홍보 업무	4시간
	경찰서에서 민원안내 및 상담	4시간
	자원봉사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자 지도	4시간
	기타 공공행정 및 사무지원 분야 봉사활동	
기타 공익사업 수행 등	자원봉사 관련 회의	2시간
	기타봉사활동(봉사처에서 기준에 맞게 모집하는 봉사)	